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· ETN의 기본 예탁금 상향)

4. 금융투자협회 규정*

가.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(2026/7/30 개정 · 2026/7/3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· ETN의 기본 예탁금 상향 등을 추진하기 위함
 - 금융위원회의 ‘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’(2026.7.16.)의 일환

2) 주요 내용

-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· ETN 투자시에도 국내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· ETN과 동일하게 ‘기본예탁금 3,000만원, 대용증권 미인정’ 등을 적용(제4-13조)
 - 거래경험 등에 따른 기본예탁금 완화 제한
 -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· ETN의 기본예탁금 내용은 한국거래소 규정 준용
 - 단, 대용증권 미인정 등 추후 거래소 규정 개정으로 인한 준용 문구 변경 필요시 금융투자협회 「이사회운영규정」 제13조 제2호에 근거하여 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 예정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